

2021년도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4 28.(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8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44건(안건번호 제2021-43149호~4403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43149호(순번 1번)는 자막공유 사이트에 최신 영화의 우리말 자막파일이 게시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파일은 이용자들이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43150호~43167호(순번 2번~19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43168호~43187호(순번 20번~39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44039호(순번 891번)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9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448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전번호 제2021-2478호~292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개에 접속할 수 없는 98개의 URL 정보는 부결하고, 대체사이트 4개에 접속할 수 있는 35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8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8쪽의 게시판명, 10쪽의 밴드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판명, 밴드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페이스북 영상 불법성 심의 회의 부분인 11쪽~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C, B, A, D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34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저작권자인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자막공유사이트인 '◆◆◆◆'의 이용자가 민원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영화 '◆◆◆◆ ◆◆' 자막 파일(srt)을 무단 전송하였음. 총 게시물은 1건임.

해당 영화 저작물은 2021. 3. 25.에 개봉하였으며, 2021. 4. 23. 현재 일부 극장 상영 중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0,000원에 대여, 14,900원에 구매 가능함.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의 “◆◆ ◆◆◆◆ ◆◆◆◆ ◆◆◆◆◆◆. ◆◆ ◆◆ ◆◆, ◆◆ ◆◆◆ ◆◆◆ ◆◆◆”라는 내용에 비추어 보아,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판단됨.

자막파일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권리자가 직접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시정권고 판단의 적극적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한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등급분류정보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제작사는 일본의 ‘◆◆◆◆◆◆’이며, 민원인 ‘◆◆◆◆◆◆◆◆◆◆◆◆’는 수입 및 배급사로 보임.
- A 위원: 온라인 심의 시 심의안전별로 저작권사가 명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넷플릭스이지만,

일부 콘텐츠의 경우는 넷플릭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의 경우 넷플릭스는 배급을 담당할 뿐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음. 이러한 경우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라고 판단하는지?

- C 위원: 시정권고 제도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불법복제물이 유통될 경우 피해 확산이 대량적이고 긴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원에 불법복제물을 신고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copy112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시정권고 심의 요청을 위하여 불법복제물 신고를 하는 경우, 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서 '회원', '비회원(익명)', '권리자'로 구분하여 민원 신고를 할 수 있음.
- D 위원: 민원 사안의 경우 제3자인 일반인의 신고가 대부분임. 해당 사안의 민원인은 해당 영화의 우리나라 배급사로 추정됨. 보호원은 신고 단계에서 민원인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음. 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민원인 신고접수 상세정보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민원인은 해당 영화에 대한 권리 증명으로서 'LONG FORM AGREEMENT'를 제출하였음. (계약서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이 제출한 2020. 10. 16.자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일로부터 6년간 VOD 권리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권리 여부를 검토한 것은 아니

나, 해당 사안의 경우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D 위원: 현재 민원 신고의 적격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익명의 일반인 신고 역시 허용하는 상황에서 저작권자 여부를 다투어 민원 신고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함.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B, A, C 위원: 의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1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24개 게시물임. 위메프, 네이버쇼핑, 쿠팡, 이마트몰, 티몬,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EV PAD' 또는 'EV BOX'라고 불리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이하 '본건 기기'라고 함)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본건 기기의 자세한 작동원리 및 기능은 보호원의 과학수사지원부에서 작성한 "불법유통 셋톱박스(EV BOX) 기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순번 2번, 13번 심의대상 URL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본건 기기의 언어 설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자

세히 설명하고 있음.

본 기기 판매 행위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행위임이 인정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며,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전문위원은 본 안전에 대하여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다고 검토 보고 하였음. 동시중계방송권은 방송사업자의 권리인데, 본건 기기가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 등 V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방송’과 ‘전송’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공중송신권’의 침해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임.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3은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엄밀하게 따지면 해당 사안에서 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스트리밍 방식의 VOD서비스’에만 미친다고 할 것임. 따라서 본 안전에 ‘전송권’을 비롯하여 ‘동시중계방송권’까지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공중송신권’을 적용한다면, 이는 심의위원

회의 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D 위원: 본 안건은 과거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 기준에 따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 B, A, C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19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0번~39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무료 내지 110 포인트에 제공한 사안임. 총 27개 게시물임.

(순번 20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71-2화, 번외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점 등에서 단행본은 8,100원, 전자책은 4,500원에 판매중임. 게시물 이미지 내에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여짐.

(순번 32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점 등에서 단행본은 8,550원에 판매중임. 순번 20번과 유사하게, 게시물 이미지 내에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여짐.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C, D, B 위원: 시정권고의 요건이 충족되어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0번~39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40번~89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29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음악,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출장 십오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67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출장 십오야'를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1. 3. 19.에 방영한 2화를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tvN에서 2021. 3. 12.부터 현재까지 총 6화 방영중임. 티빙(TVING)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 십오야'에서 편집본을 유료 광고 감상 후 시청 가능함.
(영화 '더 파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78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더 파더'를 9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96분을 mp4 파일로 제공함. 2021. 4. 7. 개봉하였으며, 현재 일부 극장 상영 중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4,900원에 구매, 10,000원에 대여 가능함.

(음악 '살다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88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살다가'를 6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SG 워너비'의 음원 3곡 중 1곡임. 2005. 3. 23.에 발매한 발라드 음악으로, 2021. 4. 27. 기준 멜론 사이트 음원 차트 순위 17위임. 최근 MBC '놀면 뭐하니?' 예능 프로그램 출연 후 각종 음원 상위 차트에 진입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9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긴급대응저작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 ◆◆ ◆◆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우리나라 영화 '◆◆◆ ◆'이 공개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됨에 따라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 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1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891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 웹하드에서 해당 저작물의 전체분량을 185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A, B, C 위원: 순번 40번~891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0번~89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3149호~44039호(순번 1번~89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3쪽부터 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2478호~2575호(순번 1~98번)는 부결하고, 제2021-2576호~2925호(순번 99~448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6.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